

의안번호	2213928
의 퇴 인	엄태영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20.
추 계 번호	25F587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교환·분합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취득세는 2026년 0.38억원, 2030년 0.38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.9억원(연평균 0.3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취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교환·분합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8조제2항)	-0.38	-0.38	-0.38	-0.38	-0.38	-1.90	-0.38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제2항 (교환·분합하는 농지 에 대한 취득세 면제)	「농어촌정비법」 또는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라 교환·분합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제2항 (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
- 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평균 취득세 감면실적: 0.38억원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「농어촌정비법」 또는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라 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
 - 다만,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·분합하는 경우에는 제외
- (추계방법) 2019년 0.27억원에서 2021년 0.7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2023년 0.11억원으로 감소하여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평균 감면실적: 0.38억원

[표 2] 교환·분합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0.27	0.35	0.72	0.46	0.11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교환·분합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취득세는 2026년 0.38억원, 2030년 0.38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.9억원(연평균 0.3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취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교환·분합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8조제2항)	-0.38	-0.38	-0.38	-0.38	-0.38	-1.90	-0.38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